긴급입찰 사유서

1. 사업 개요

가. 사 업 명 : 2027년~2028년 수산물안전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

나. 소요예산 : 1,572,000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

* (1년차) 786,000,000원, (2년차) 786,000,000원

다. 사업기간 : 2027. 1. 1. ~ 2028. 12. 31.(장기계속계약, 2년)

2.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

가. 법적근거
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4항제3호

> 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> 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> 1의2.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
>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> **3. 긴급한 행사**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**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**
>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수산물의 품질관리, 안전성 확보,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소비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산물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및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함
- 본 용역의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추진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
